

사회재난대책법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98
----------	-------

발의연월일 : 2026. 6. 4.

발 의 자 : 이광희 · 전현희 · 이훈기
양부남 · 김 윤 · 최민희
권향엽 · 정진욱 · 박지원
오세희 · 박정현 · 김성희
윤건영 · 권철승 · 임미애
김문수 의원(16인)

제안이유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이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 대책의 수립·시행, 중점관리다중이용집시설의 지정·관리, 위기징후 감시 체계의 구축·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에 한정하여 규정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보완하는 등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등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등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특정관리지역의 지정과 정비 및 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과 보호 및 관리,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과 관리, 지역축제의 안

전관리 등으로 각각 규정함.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7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다.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안 제18조)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계절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함.
-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상황 대비매뉴얼의 작성·관리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위기상황 대비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위기상황 대비훈련으로 규정함.

마. 피해 방지 조치 등(안 제21조)

- 1)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재산 피해의 방지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 또는 활동을 중단·종료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2)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법인의 장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단체·법인의 장은 필요한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

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함.

아.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분석 및 평가 등(안 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등 사회재난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

사회재난대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말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보 분야 비상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제외한다.

가. 화재·붕괴·폭발·질병·다중운집인파사고·교통사고·항공기사고·해양사고·환경오염(미세먼지를 포함한다)·화학사고·방사능사고·우주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 또는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피해

- 나.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 또는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피해
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수도(水道), 금융, 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행정 등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사회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그 밖의 인적·물적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운집(雲集)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각종 행사장(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한이나 업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법인

라.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법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은 제외한다)

6. “다중운집시설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당 다중운집시설의 소유자

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다중운집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다중운집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시책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 및 업무에 맞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재난의 예방

제5조(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기본법 제22조·제23조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집행계획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재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2. 사회재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3.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4.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5. 제8조에 따른 특정관리지역의 관리

6.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보호·관리

7. 그 밖에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특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특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2.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정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예방대책의 수립 대상 지역 중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또는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지역(이하 “특정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특정관리지역의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특정관리지역에 대하여 사회재난의 발생 위험성을 없애는 조치 등 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법인(이하 “관리기관 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적·사회적 중요성
 2. 관리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국가핵심기반과의 상호연계성
 4.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규모 및 범위
 5. 사회재난의 발생 가능성 및 그 복구의 용이성
-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등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기관등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안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관리기관등의 장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대상 중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대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권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반의 보호·관리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관리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관리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지침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보호·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사회재난의 예방 강화에 기여한 관리기관등(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본법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함께 구축·운영하고,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이하 “다중운집재난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시설을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기 또는 기간에 다중이 운집하거나 밀집하는 다중운집시설

2.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다중운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 운집하거나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재난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중운집시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다중운집시설의 특성상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이하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을 지정했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운집시설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다중운집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16조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및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재난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등) ① 제12조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소관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중운집재난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매년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비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관리 인력의 임무 및 배치
4.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5. 안전점검

6. 그 밖에 질서유지와 화재 예방 등 다중운집재난등의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중운집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요구를 받은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완료한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이하 “민간 지역축제”라 한다)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완료한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민간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및 민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재난의 대비

제17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화재·붕괴·폭발 등 위기 형태
2.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3. 위기징후 감시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위기
징후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연계되어
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위기징후 감시
체계의 표준모델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원활히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
여야 한다.

1. 계절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2.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3.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히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이하 “사전대비태세확립유지”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책기간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전대비태세확립유지에 관한 지침(이하 “사전대비태세확립유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대비태세확립유지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기간, 사전대비태세확립유지지침 및 점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기상황대비매뉴얼의 작성·관리 등) ①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소관 다중운집시설에 대하여 사회재난의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대비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

용하는 경우에는 위기상황대비매뉴얼을 작성·관리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대비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중운집시설관리자에게 개선·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대비매뉴얼의 작성·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보완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기상황대비훈련) ①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의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이하 “위기상황대비훈련”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재난 관련 대비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대비훈련을 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대비훈련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관리자에게 개선·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대비훈련, 실태 점검 및 개선·보완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재난의 대응

제21조(피해 방지 조치 등) ① 다중이용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재산 피해의 방지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인명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관리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활동을 중단·종료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일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22조(강제조치 및 면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강제로 해당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강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그 강제조치를 집행한 공무원(제2항에 따른 지원 인력을 포함한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 등을 통하여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에 필요한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및 협업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 등을 통하여 관할구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단체·법인의 장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단체·법인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에 필요한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및 협업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

관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분석·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등 사회재난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 등 신체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분석·평가 및 사회재난의 대책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선·보완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개선·보완하고 그 내용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다중운집시설관리자에게 사회재난의 예방·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특정관리지역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위기상황대비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위기상황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30조(벌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기상황대비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기상황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으로 본다.

제4조(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수립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또는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는 제16조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로 본다.

제5조(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작성·관리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성·관리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실시한 훈련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질병 등 각종 사고와 그밖에 이

에 준하는 인적·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사회재난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 및 「사회재난대책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 또는”으로,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을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 또는”으로,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을 “장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4조의6,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의3 중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

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